

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994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. 2. 14.

발의자 : 서영석 · 김병욱 · 김상희  
김태년 · 우원식 · 설훈  
이용빈 · 이성만 · 인재근  
강선우 · 고민정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마약류 유통체계가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를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.

특히, 청소년, 청년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, 이는 언론이 마약류 관련 보도의 내용에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노출되어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, 마약류 관련 내용을 특별한 기준 없이 방송 및 보도함에 따라 시청자가 마약류에 대하여 호기심과 친숙함으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4 신설).

#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4(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 요청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·신문·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p><u>제2조의4(마약류 사건보도 권고</u></p> <p><u>기준의 수립 및 준수 요청) ①</u></p> <p>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</u></p> <p><u>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</u></p> <p><u>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·</u></p> <p><u>신문·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</u></p> <p><u>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</u></p> <p><u>권고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언론</u></p> <p><u>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</u></p> <p><u>한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</u></p> <p><u>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</u></p> <p><u>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</u></p> <p><u>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</u></p> <p><u>하여야 한다.</u></p> |